

성명문

모르드게 모임(종교법인 소목자 훈련회로 인한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지원회)
대표 加藤光一(가토 켄이치)

2011년 5월 20일, 水戸(미토)지방법관소 土浦(추치우라)지부 (재판장 神田大助 간다 다이수께)는 준강간 사건 피고인의 종교법인 ‘소목자 훈련원’ 대표자 변재창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은 이 판결을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판결에서는 ‘피해자 증언이 확실한 신용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해 인정까지 가지 않고, 유죄 실행 판결을 받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과 같은 밀실 내에서 일어나 물적 증거가 적고 당사자의 한 쪽인 용의자가 용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서 약자인 피해자가 받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으로 크며, 특히 법정에서 바르게 자신을 주장하는 것은 큰 부담을 동반합니다. 소송을 해도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공공연히 밝혀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진실을 찾는 일단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변 피고인의 당일의 알리바이가 성립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따른 이번 판결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측으로부터 제출된 증거가 가지는 부자연스러움에 대해 철저하고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건의 발생 배경에는 국제복음그리스도교회의 담임목사인 변재창 선교사가 스스로를 영적 지도자라고 하여 그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는 권위주의적인 교회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담임목사가 ‘준강간’을 포함한 많은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피해를 피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여 거꾸로 소송 자체가 죄라고 피해자를 믿게 하여 이러한 피해 사실을 은폐해온 일이 본 사건의 발각을 늦추고 피해를 확대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담임목사를 거스르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버려진다고 믿게 되어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받게 된 심리적인 과정이나 마음의 갈등
등의 해명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1 심에서는 유죄 실형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본 사건을 기소하고 공판 유지에
전력을 다한 검찰청 츠쿠바 경찰서를 시작으로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검찰청에는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그리고 진실 해명을 위해 꼭 항소할
것을 바랍니다.

본 형사재판의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민사재판(성추행=2009년 7월
29일제소= 및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학대=2009년 12월 15일제소=에 대해. 동경 지방재판
민사부. 원고 5명)에 있어 변재창 피고 및 피고교단은 민사상의 책임을 속히 인정하고
속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개의 모임은 앞으로도 본 사건의 피해자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민사 재판에서의
승소를 얻어 내고 담임목사의 권위를 너무 강조하여 동종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일본의
일부 교회에 대해 경종을 울려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